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채권추심 준수사항 및 담보권실행 규정 신설
- 나. 채무조정규정 신설
- 다. 이행청구 예외사유 보완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9월 2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장석진 차장(tjrwls120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13
- 팩스번호 : 0505-036-0953

붙임: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절 이행청구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규정 제51조 및 제63조 의 지급정지 유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절 이행청구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제51조 및 제63조의 지급정지 유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지급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청구 예외사유 보완
제4장 구상권관리	제4장 구상권관리	
제1절 구상권의 보전 제27조(채무관계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채무관계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절 구상권의 보전 제27조(채무관계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채무관계자 관리와 채권추심 유의사항 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구상권의 회수 제34조(담보권실행 및 강제회수) ① ~ ② (생략) 〈신설〉	제2절 구상권의 회수 제34조(담보권실행 및 강제회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를 적용받는 담보주택의 담보권실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적용대상 채권추심 준수사항 및 담보권실행 규정 신설
제3절 담보권의 실행 제38조(경매실행의 예정통지) ① ~ ② (생략) 〈신설〉	제3절 담보권의 실행 제38조(경매실행의 예정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를 적용받는 대상의 경매실행의 예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40조(상속인에 대한 저당권실행)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0조(상속인에 대한 저당권실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를 적용 받는 대상의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제6절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u> <u><신설></u>	<u>제6절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및 채무조정</u> <u>제62조의2(채무조정)</u> ① 최초 대출약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 있는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관계자의 조정범위 등 채무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기준」을 따른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규정 신설
<u><신설></u>	<u>부칙 (9)</u>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